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메가(주) 보험대리점

2. 제재조치일 : 2026. 7.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1,510만원) 부과
보험설계사	과태료(500만원~3,600만원) 부과 : 2명

4. 제재대상사실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메가(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는 2021. 8. 12. ~ 2021. 10. 28.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乙 등 4명이 실제 모집한 흥국생명보험(주) ‘무배당흥국생명가족사랑치매간병Plus보험’ 등 총 24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乙 등 4인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총 8.6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금소법」 제25조 제1항 제2호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메가(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2021. 6. 16. ~ 2021. 6. 29.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KDB생명보험(주) '(무)新내맘대로건강보험' 등 총 1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丁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한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2.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1.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